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5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강경숙 · 신장식 · 박은정
이해민 · 김재원 · 서왕진
문정복 · 황운하 · 정을호
정춘생 · 김준형 · 백선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이 판단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거수 등 공개 협의를 통한 의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등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국회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3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신청한”을 “하는”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하거나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감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조치에 관하여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u><신설></u>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u> 다만, 제17조제 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 으로 의결한다.
③ ~ ⑥ (생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생략)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 니한다. 다만, <u>피해학생·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 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u>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 하느----- ----- -----

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u>공개</u> <u>하여야</u> 한다. <신 설> <신 설>	-----<u>공개하거나 제출하</u> <u>여야</u>-----. 1. <u>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u> <u>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u> 2. <u>감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학</u> <u>교폭력 조치에 관하여 감사자</u> <u>료를 요청하는 경우</u>
---	---